##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72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어기구·이병진·박용갑

박수현 • 박희승 • 박균택

이개호 • 한정애 • 오세희

김종민 · 정춘생 · 이성윤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,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·외식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.

이에 따라 한식의 문화적·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 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 설).

법률 제 호

##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식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한식의 날) ①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6조의2(한식의 날) ① 한식산
	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
	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
	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
	<u>한다.</u>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
	<u>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</u>
	실시할 수 있다.